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업무 위탁기관 등 고독사 예방·관리 사무 주체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,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,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등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(안 제6조의3 신설)

- 1) 보건복지부장관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,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,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의 운영 등 고독사 예방·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2)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가 고독사 실태조사 및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, 해당 사무를

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- 3)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정보등”이라 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나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
2.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사무
3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

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

피한 경우 건강정보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이하 이 조에서 “건강정보등”이라 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나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</u> <u>2.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사무</u> <u>3.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</u>

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24